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후속 R&D 기획·발굴 및 지원으로 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 지원규모 : 8.3억원 이내, 5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원천기술보유기관**)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과기정통부 기초원천 우수과제 수행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원천 기술보유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하며, 미참여시 평가 및 선정대상 제외

<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상용화(사업화)	⇒	• 기초·원천 기술 지원	공동연구 개발기관 (원천기술보유기관)
	• 후속 R&D(이어달리기)를 주도적으로 수행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수행	
	•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중 소기업	⇐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 참여 가능	

□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정공모<별첨 참조>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이어달리기 RFP 리스트 >

대분류	RFP 번호	RFP명
전기·전자	2026-1	TGG 결정립 배향 공정을 적용한 공압 밸브용 고변위·고응답 Cantilever 압전 액추에이터 개발
바이오의료	2026-2	초고속 초소형 광열 기반 현장형 분자진단 시스템 상용화 기술 개발
화학	2026-3	Physical AI 기반 공정 진단·제어 플랫폼을 통한 전기·전자제품용 재생 플라스틱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정보통신	2026-4	자율 운용 기반의 Federated Private-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바이오의료	2026-5	이온농도분극현상에 의한 분리 농축 기술 기반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바이오의료	2026-6	피부 비접촉식 고감도 심혈관 진단평가를 위한 자기혈류파 센싱기술 개발
전기·전자	2026-7	대면적 고순도 및 도핑된 그래핀 소재/소자 플랫폼 상용화 지원
화학	2026-8	수소연료전지용 황도핑 그래핀·탄소나노섬유 기반 고전도 GDL 상용화 기술 개발
화학	2026-9	그래핀 복합소재 섬유 기반 다중 생체신호 감지 스마트 스포츠웨어 상용화
전기·전자	2026-10	대면적 진공전사기술을 활용한 6인치 이상 웨이퍼 스케일 이차원 소재 기반 광센서 양산기술 개발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6.9.1)로부터 '26.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어 달리기	26.9.1~`26.12.31(4개월)	`27.1.1~`27.12.31(12개월)	`28.1.1~`28.8.31(8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67	9	81	90	257
2차년도	500	27	242	269	769
3차년도	333	18	161	179	512
합계	1,000	54	484	538	1,538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65	3.5	31.5	35	100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붙임2)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필요시)
- **(해외진출 전략수립)**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수립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 계상 가능(필요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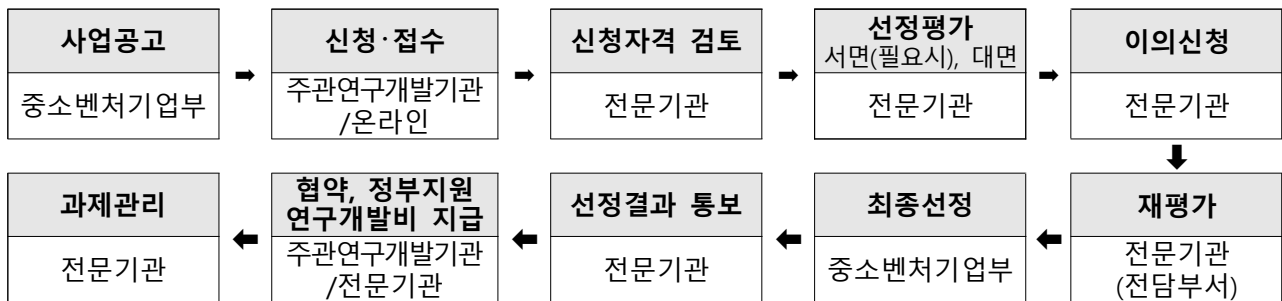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text{서면평가 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사업성(2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15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파급효과(15)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수출역량,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35)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10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20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사업성(25)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5
	· 글로벌 성장 가능성	10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30)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연구개발역량(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본 과제 수행을 위한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10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ESG 적합성(5)	· ESG 등급의 적합성	5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이의신청 결과 ‘可’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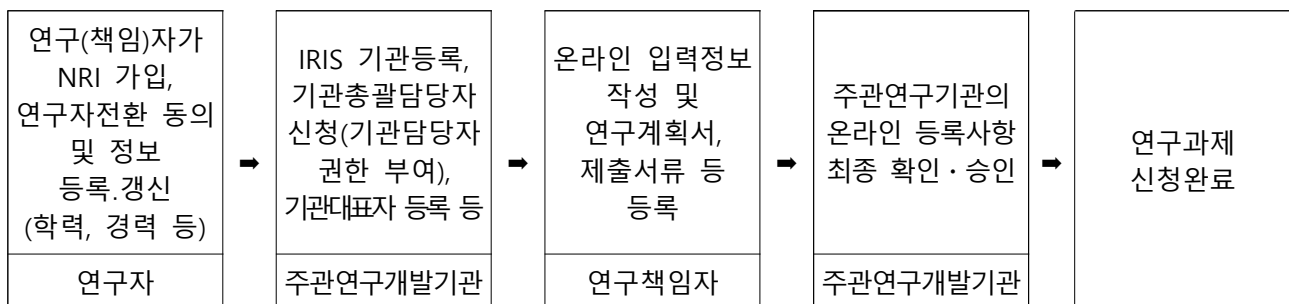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6년 7월 8일(수)~7월 22일(수),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 · 접수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세부과제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 제출

< 글로벌선도기술개발(이어달리기) 제출서류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u>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u>.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⑥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⑧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확인서에 한함)			○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4. 기타사항

□ (선택사항) 과제 선정 시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내용) 해외시장분석기관(KISTI)을 활용,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 혁신전략 수립'을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수립 관련 비용*(50백만원)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해외진출 전략수립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기타사항) 해외진출 전략수립 신청 시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등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 (선택사항) 과제 선정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기타사항)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신청 시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등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005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lfqd

참고 1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상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상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2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어달리기)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 강소+ 단계' 선정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선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포함	3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②	최근 3년 이내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③	「K-유니콘 프로젝트(예비유니콘 특례보증)」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선정)서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⑧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업	1점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⑪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1점	기술보호선도기업지정서 (유효기간 내 지정서에 한함)
⑫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지정서에 한함)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참고 2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내용

□ 개요

-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유망기업 선정부터 기술개발(전략수립) 및 맞춤형 현지시장 안착 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시장분석기관(KISTI)을 활용,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②R&D 혁신전략 수립을 지원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추진체계 >

지원	기업 자체활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KISTI 해외시장 지원
단계	사업기획	기술개발	실증(인증)
구분	①글로벌 유망기업 검토	②R&D 혁신전략 수립	③글로벌 스케일업
주요 내용	· AI 기반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 체계적으로 글로벌 역량있는 기업을 분석·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성, 잠재력 등 활용	· 글로벌시장 최적화 제품개발 전략 도출 지원 · 목표시장 수요, 현지 검증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진출 전략 수립	· R&D 성과 실질적 확산 · 시장 안착 지원 · 데이터 기반 글로벌 기술 사업화 단계 맞춤형 지원
기간/예산	0.5개월(2주)	6개월 / 50백만원	6개월
주요 결과	· 신청기업 대상 글로벌 경쟁력 관련 평가리포트	· 혁신전략 수립 보고서 → R&D 사업계획서 반영 必	· 현지 인증&실증 지원 · VC투자, 바이어 매칭 지원

- 다수의 해외시장분석 전문가(석·박사급 전문PM 69명) 및 국내외 시장통합 빅데이터, 해외현지거점, AI 분석모델* 등을 보유한 KISTI를 활용,

* APOLLO(AI 기반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SMARTK2C(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KMAPS(산업·시장 분석 예측 시스템)

- 제품개발 및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제고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운영프로세스(안) >



□ 해외시장분석기관

- 해외분석전문기관으로 유사사업 수행경험과 전문인력, 글로벌 거점, AI 플랫폼 등을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활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23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사업들*의 해외시장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 ('23년) 혁신제품 고도화 R&D 30개 社, ('24년) 해외시장진출 R&D 10개 社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인프라 현황	
○ (전문연구인력) 데이터 분석, 산업시장 분석, AI 모델링, 기술사업화 실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69명*보유	
* 전원 AI+분석모델의 현장 활용 경험 보유, 이 중 약 40명 이상은 기술사업화 분야 경력 10년 이상, 국내외 분야별 도메인 전문가 풀 5,000여명 이상을 확보	
○ (글로벌 혁신거점) 국내외 혁신거점*을 활용, VC 투자, 잠재 바이어 매칭, 인큐베이팅(현지 인증 획득, 공동연구 등) 맞춤형 지원	
* Numen Ventures(미국), Venture Advisory Partners(독일), Asian Insider(아시아), Invest Tokyo(일본), Invest Victoria(호주), Invest in Madrid(스페인) 등 25개 기관 보유	
○ (AI 플랫폼) KISTI가 개발한 AI 기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APOLLO, SmartK2C 등)*을 활용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 및 수요기업 발굴 지원	
* Apollo: AI 기반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 SmartK2C: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 Kmaps: 산업·시장 분석 예측 시스템	

참고 3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수립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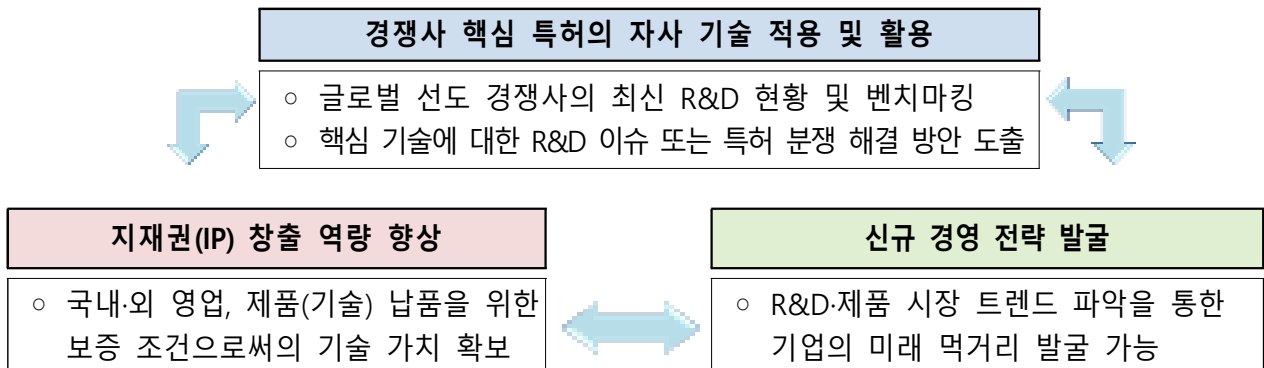
- (목적) 수출 시장 중심의 국내·외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예산) 주관연구개발기관 R&D 연구활동비로 진행

구분	IP 전략수립지원			
타입 (택1)	기본 타입 (R&D 초기 대응 전략)		심화 타입 (R&D 중장기 전략)	
소요 비용 (R&D 예산)	3,000만원(부가세 별도)		6,0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기간	2.5개월 지원 R&D 시작 후 1년 이내 지원		5개월 지원 1년 이내 1회, R&D 종료 전 1회	
IP전략 지원 내용	기본	필수+선택(택1)	1년 이내	
	심화	필수+선택(택2)	1년 이내	R&D 종료 전 1회
	필수	① 핵심특허 대응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해소	- 주요 경쟁사 핵심 특허 조사분석 - 핵심 특허에 대한 회피, 무효화 전략 제공	세부 기술별 대응 방안 수립 (공동연구, 위탁연구기술)
	선택 1	② R&D정교화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확보	- R&D 방향 제시 및 중복연구 방지 - 회피기술, 개량 기술 등 R&D 아이디어 제시 - 경쟁사 IP-Portfolio 및 관련 기술 특허 DB 제공	- 후속 R&D 방향 제시 - 세부 기술별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통한 융합 및 대체 기술 방안 제공 - 특허 DB 보강
	선택 2	③ 신규 IP 창출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 기출원 특허 보강 - 특허 창출 전략 제시	- 추가 개발 기술에 대한 보강 특허 창출 - 해외 특허 창출 전략 제시
후속 지원	- 출원 비용 지원: 국내(200만원 이내), 해외(500만원 이내) - IP교육, R&D교육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R&D 현황에 따라 IP 전략수립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맞춤형 IP 전략지원으로 다양한 연계 효과 도출



<IP 전략수립지원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 IP 역량진단	○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 <u>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u>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